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4. 12. 02.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11. 15. 강동오 의원 외 7명

나. 회부일자: 2024. 11. 15.

다. 상정일자: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2024. 12. 02.)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고병준 의원

가. 제안이유

고령화와 저출산, 코로나로 인해 헌혈 실적이 감소하여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이에 적극적인 헌혈문화를 조성하고, 장려
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됨.

나. 주요내용

- 1) 헌혈자원봉사활동 추진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신설 (안 제10조제1항)
- 2) 마포구 소재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추가 (안 제10조제2항)
 -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헌혈관리법」
-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3) 기타

가) 입법예고 : 2024. 10. 16 ~ 2024. 10. 22. (의견 없음)

나)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없음.

3. 검토의견 [신준호 전문위원]

가. 조례 제정 배경

- 국민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 활성화로 지역내 안정적인 헌혈자원을 확보하여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 조문 검토

- 안 제10조제1항은 헌혈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 추진단체에 예산 범위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관내 헌혈자원봉사 활동단체는 현재 없음.
- 안 제10조제2항 헌혈장려문화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을 기존 국민대상에서 관내 소재 학교(고등학교와 대학교) 재학생을 추가로 규정함.

다.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혈액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 혈액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헌혈 권장 시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헌혈 자원봉사활동단체에 예산 지원과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로서 온누리상품권 또는 마포사랑상품권을 1회당 1만원 지급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음.

- 다만, 현재 관내 헌혈센터의 헌혈 실적을 파악하고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중 구민의 학생에게 인센티브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서대문구와 중구 두 곳에서만 시행중임.

<표 1. 마포구 소재 헌혈의 집(홍대센터) 헌혈현황(2019년~2023년)>¹⁾

(단위 : 건)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헌혈실적	18,150	14,460	14,644	15,899	18,215
마포구민 헌혈 실적	4,036	4,131	4,512	4,334	4,489

※ 헌혈의집 홍대센터 (마포구 동교동162-1 대화빌딩 6층)

<표 2. 마포구 소재 대학교 및 고등학교 현황>

분류	학교명	학생수(명)	비고
대학교(2)	서강대학교	12,178	사립
	홍익대학교	21,968	사립
고등학교(9)	경성고	639	사립
	광성고	738	사립
	상암고	851	공립
	서울디자인고	821	사립
	서울여고	803	고립
	송문고	542	사립
	한세사이버보안고	216	사립
	홍대부속여고	727	사립
	홍익디자인고	316	사립
특수학교(2)	아현산업정보학교	434	공립
	한국우진학교	184	국립
합계		40,417	

1) 마포구 보건소(2024), 2024년 구민 헌혈 장려 계획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

[관계 법령]

「혈액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6(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의8(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본조신설 2021.12.21] [[시행일 2023.6.22]]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
- ③ 헌혈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